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송재형 의원 외 10명
- 나. 의안번호 : 제1505호
- 다. 제출일자 : 2016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16. 11. 10.

2. 제안사유

- 서울시와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조례상의 위임 근거 없이 공공기관의 자체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(안 제23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주차장법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6. 11. 16 ~ 23
 - 제출의견 : 없음
-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 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) : 보류
 -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의 자율적 운영에 따르는 것으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가. 개요
 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나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·노외주차장·부설주차장¹⁾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9조²⁾ 및 제14조³⁾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제7조⁴⁾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사항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,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경우 법 제19조의3에서⁵⁾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23조에서는⁶⁾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감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황임
- 동 개정조례안은 시·자치구 및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해 현행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의 공영주차장에 적용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조항 외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관용차량, 외빈차량 및 관리자가 인정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·자치구 등 공공기관별 자체 관리 규정⁷⁾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현실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고, 주차요금 부

1) 제2조(정의) 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
가. **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**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나. **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**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다. **부설주차장**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2) **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**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“노상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**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**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** - 후략 -

② 제1항에 따른 **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 - 후략 -

3) **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 ① 제13조에 따라 **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**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**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**

② **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4)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5) 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6) 제23조(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)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7) 「서울특별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(2011.4.1.)」 제5조(주차요금 및 요금감면) 등

과와 감면 조항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

다만,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경우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이용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상·노외주차장의 감면 범위에 추가하여 광범위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

- 이와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이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자문 결과⁸⁾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
- 다만, 서울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이 실질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, 동 조례 개정 내용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

8) 입법·법률고문 자문의견 회신, 입법담당관-283(2017.1.26.)